

##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뉴질랜드신문평의회

### I. 평의회 설립배경

뉴질랜드신문평의회(The New Zealand Press Council)는 신문 및 평의회 후원 단체들의 기관지 보도에 대한 불만호소를 심의하기 위해 1972년 9월 20일 설립된 자율적 윤리기관이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영국신문평의회와 운영방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평의회 정관도 영국신문평의회와 개정정관을 모방해 제정했다.

### II. 평의회 구성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의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4인은 각각 1인씩 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 4인 가운데 2인은 현직 언론인이며, 나머지 2인은 사회각계에서 선출된 일반시민이다.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부의장직은 두지 않으며, 대신 의장이 회의에 불참케 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대리위원 가운데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 중에서 주로 선임된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후원단체로는 뉴질랜드신문발행인협회와 뉴질랜드기자협회(북부지역 제외), 뉴질랜드 북부지역기자협회 등이 있다.

### III. 평의회 활동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일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의 위원총회를 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장이나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불만 호소건은 위원총회에서 심의처리하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불만호소인은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하기에 앞서 우선 일차적으로 해당 신문사의 편집국장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불만호소인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일단 사건심의에 착수하게 되면 자체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심의 전에 적극적인 중재를 벌여 당사자간에 화해토록 한다. 평의회가 심의한 후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문은 당사자 양측에 송달되며, 신문사측은 이 평결문을 게재해야만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사무국장 H. L. Verry 씨는 평의회와 평결결과에 대해 해당 신문사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1972년 설립이후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50건 내외의 불만호소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 IV. 불만호소절차

1. 본 평의회는 활동은 평의회 정관 제 2조에 규정된 목표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 진다.
2. 본 평의회는 자율적 윤리기관이므로 불만호소인이 불만호소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본 평의회가 불만호소를 심의처리 하는데에는 수수료가 필요없다.
3. 불만호소인은 먼저 해당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서신으로 접촉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해당 편집국장에게 불만호소의 이유와 내용을 인식시키는데 필요하며, 당사자인 그가 문제를 먼저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불만호소인은 언론침해를 당한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불만호소인 이 해당신문사 편집국장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신문평의회 사무국장을 접촉하는 것이다. 그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1) 불만호소에 대한 진술서
  - (2) 해당신문사 편집국장과 교환했던 서신의 사본
  - (3)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보도본문
  - (4) 사건 관계인들의 성명과 주소, 불만호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타 증거자료

5. 이 시점에서부터 평의회는 자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평의회는 구두증언을 위해 불만호소인 및 관계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 평의회에서의 절차는 비공개적 이어서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는다.
6. 평의회가 내린 평결은 당사자 양측에 전달되며, 평의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결문을 원 보도문의 사실개요와 함께 지면에 게재하도록 해당 신문사에 요구한다.
7. 본 평의회는 윤리기관이므로, 사법기관을 대신하거나 보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항상 주지되어야 한다.
8. 불만호소건이 법적 소송제기가 가능할 경우, 불만호소인은 법률소송제기를 포기하거나 이미 제기된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권 위임서를 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의회심의회가 소송 전단계로서의 시운전(trial run)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9. 본 평의회는 정관에 규정된 대로 뉴질랜드 신문발행인협회와 지역사회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심의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영이든 사영이든 불만호소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 V. 평의회 정관

(본 정관은 1984년 2월 27일 평의회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정관 개정전에 3개의 평의회 구성 단체들의 사전동의를 있었다.)

### 제1조 설립

뉴질랜드신문평의회(The New Zealand Press Council, 이하 「평의회」라 한다)는 1972년 9월 20일을 기해 자율적으로 발족된다.

### 제2조 목표

본 평의회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뉴질랜드 언론자유를 보전한다.
2. 뉴질랜드 언론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킨다.
3. 언론보도 및 언론인과 언론단체의 행위에 대한 불만호소를 처리한다. 또한 처리과정에서는 실제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건처리에 따른 결과적 조치들을 기록해 둔다.
4. 공익적으로 중요한 정보공급을 제한하는 듯한 정부정책을 예의 주시한다.
5. 전술한 목적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개진 하거나 중재 의뢰한다.
6. 본 평의회활동을 기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제3조 위원

본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다.

1. 의장-언론과 무관한 인사이어야 하며, 본 정관 제3조 2항에 의해 임명된 위원 2명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2. 언론계 위원 2인-위원 1명은 뉴질랜드신문발행인협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다른 1명은 뉴질랜드 기자협회(북부지역 제외)와 뉴질랜드북부지역기자협회의 공동추천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3. 비언론계 위원 2인-공중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며, 평의회 의장 및 본 정관 제3조 2항에 의해 임명된 위원 2명에 의해 공동으로 임명된다.
4. 신문발행인협회와 뉴질랜드 기자협회 (북부지역 제외), 뉴질랜드북부지역기자협회는 동 협회들이 추천 임명한 위원들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대리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본 정관 제3조 3항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은 자신들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대리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시, 평의회 의장과 본 정관 제3조 2항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의 사전동의를 있어야 한다.

5. 모든 대리 위원들은 평의회의 모든 회의에 각각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연관된 위원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다면 그 해당 대리위원은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6. 평의회의 어떤 회의에서 취해진 조치나 정위원 및 대리위원에 의한 행동은 그 해당위원이 정식으로 임명되어 자격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그런데 일단 유효하다고 인정을 받은 조치나 행동은 나중에 그 해당위원의 임명조건에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해당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도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7. 본 정관 제 3 조 2 항에 준한 임명은 위원을 임명하는 해당 구성 단체들이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제 4 조 위원 임명 조건**

1. 본 정관 제 3 조 2 항에 의해서 뉴질랜드 신문발행인협회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과 본 정관 제 3 조 4 항에 의해 임명되는 대리위원은 임명당시 일간신문사의 편집경험이 있는 상근이사 이거나 편집국의 상근간부이어야 한다.
2. 본 정관 제 3 조 2 항에 의해서 뉴질랜드기자협회 (북부지역 제외)와 뉴질랜드북부지역기자협회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들과 본 정관 제 3 조 4 항에 의해서 임명되는 대리 위원들은 추천단체의 재정담당회원 이어야 하며 임명당시 일간 신문사의 상근간부 이어야 한다.
3. 본 정관 제 4 조 1 항과 2 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 임명된 정위원 및 대리 위원들은 자의로 사임하게 될 경우 사임 1 개월 전에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 개월 후에 자격을 상실케 된다.

#### **제 5 조 위원의 퇴임**

1. 정위원 및 대리 위원들의 임기는 3 년이다. 위원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을 하게 될 경우 그 해당위원이 재임명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의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위원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정신분열을 일으키거나 1912 년 제정된 노약자보호법(the Aged and Infirm Persons Protection Act)에 의거 해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종료된다. 또한 위원이 자신의 현업에서 퇴직할 경우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실 통보하게 되면 즉시 임기 종료된다.

#### **제 6 조 결원 보충**

1. 결원보충방식은 승계하게 되는 전위원의 임명방식과 동일하다.
2. 임시위원의 임기만료시기는 승계하게 되는 전위원의 임기만료시기와 동일하며,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 7 조 정족수**

본 정관 제 8 조 3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평의회의 정족수는 의장 1 인과 위원 3 인이다. 대리위원은 자신과 연결된 해당위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만 정족수에 포함된다.

#### **제 8 조 절차 규정**

1. 본 평의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목표들의 추진 및 달성을 위한 모든 절차와 조치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2. 모든 회의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과반수투표로 결정되어진다. 평의회의장과 위원들은 1 인 1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결과 찬반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투표권 (casting vote)을 갖거나 2 차 투표실시를 명할 수 있다. 투표방식은 거수투표나 무기명비밀투표 중에서 택일한다.
3. 평의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지정된 회의개시시각으로부터 15 분 이내에 참석지 않으면 참석위원들은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때 임시의장은 정위원 여부에 관계없이 선출될 수 있으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정위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임시의장이 평의회의 정위원이라면 정족수는 의장 1 인과 위원 2 인으로 구성된다. 어느 정위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대리위원은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임시의장이 선출된 후 의장이 도착하면 임시의장임명은 실효된다.

### **제 9 조 회 의**

1. 평의회 회의는 일년에 적어도 2 번은 개최되어야 한다. 의장은 언제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통보는 위원들이 더 짧은 기간을 원치 않는 한 적어도 7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2. 임시특별회의는 위원 2 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회의소집요청은 먼저 사무국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제 10 조 소위원회**

본 평의회는 적절한 수의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위원회에 평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부분 내지 전부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임 받은 권한과 권위를 행사하는데 있어 평의회가 부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 11 조 통 지**

회의참석에 대한 통지는 사무국에 기록된 주소대로 각 위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 **제 12 조 재 정**

본 평의회의 재정은 평의회 구성 단체들이 약속한 액수대로 내는 연차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연차기부금액수에 대한 변동은 평의회 구성 단체들의 사전서면동의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연차기부금은 매년 10 월 1 일에 입금되어야 한다. 평의회 명의로 발행되는 모든 수표는 다음 인사들 가운데 최소한 2 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즉, 평의회 의장, 사무국장, 특별 위임된 위원들.

### **제 13 조 교통비**

본 평의회 회의나 각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사무국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왕복항공요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 **제 14 조 식비 수당**

본 평의회 위원들은 회의참석에 따른 식사경비를 평의회가 규정한 등급에 따라 평의회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 **제 15 조 해산**

본 평의회는 언제든지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해산결의는 평의회 구성 단체들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산결의 목적으로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위원 4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산결의 목적을 위한 회의소집 사전통보는 최소한 21 일전에 평의회 위원들과 평의회 구성 단체들의 사무국장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보에는 회의소집 목적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 16 조 정관 조문 변경**

본 평의회는 정관조문을 언제라도 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정관조문변경결의는 평의회구성단체 중 3 개 단체 이상의 사전동의가 요구되며 특별회의에서 위원 4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관조문변경을 위한 회의소집사전통보는 최소한 28 일전에 평의회 각 위원들과 구성 단체들의 사무국장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그러한 통보에는 회의소집목적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 17 조 행정 사무**

본 평의회내의 행정사무는 평의회가 결정한 근무조건과 기간에 따라 임명된 사무국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